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자동차에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른바 ‘승차구매점’(Drive-Through)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로 추가함(안 제36조제2항).
-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시장이 조례에 따라 상·하향 조정하거나 세분화한 경우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7조).

II. 검토의견

□ 각 지역별 단위부담금 등 조정 주체 명확화(안 제37조제3항)

안 제37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별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거나 상·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 제37조제2항은 물론이고, 개정안 또한 안 제37조제4항·제5항에서 각 지역별 단위부담금 등의 조정 주체를 ‘시장’으로 명시하

고 있는바, 이와 달리 안 제37조제3항에서만 그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할 경우 각 지역별 단위부담금 등을 ‘시’ 단위가 아니라 그 외 ‘군·구’ 등 단위에서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안 제37조제3항의 각 지역별 단위부담금 등 조정 주체를 ‘시장’으로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음.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략)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u>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u>	② ----- ----- <u>이용자의 규모와 특성-</u> ----- ----- ----- <u>정한다.</u>	②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100분의 100의 범위에	③	-----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서 상향 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④	-----	-----	-----	-----
			는 조례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신 설>		⑤	시장은 단위부담금 또는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⑤	-----	-----	-----	-----
						-----	-----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u>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정희)